

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[별표 13] <개정 2022. 12. 30.>

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(제20조제2항제6호 관련)

I. 단체표준 인증표시

1. 표시

가. 기본형

<단체표준 인증제품 · 서비스 표시>

<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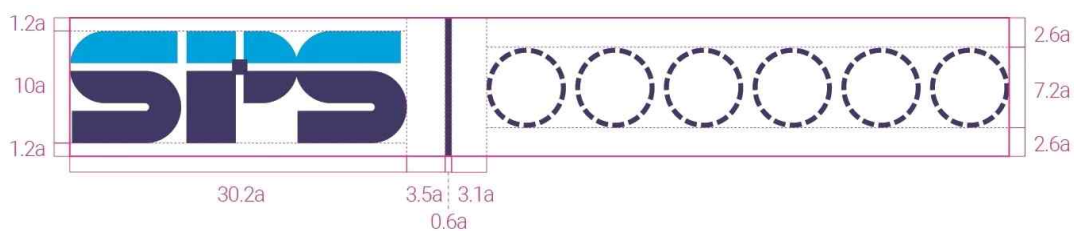


<작도법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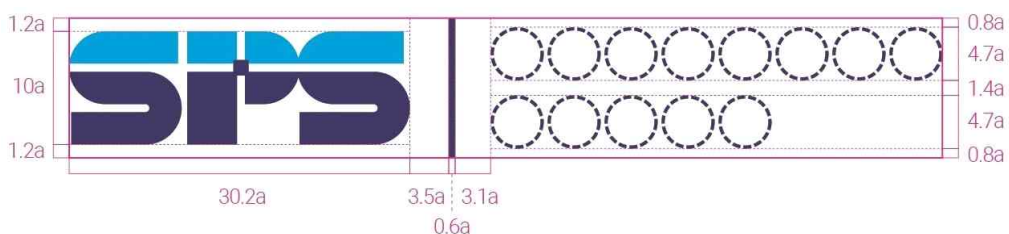


나. 인증단체명 표기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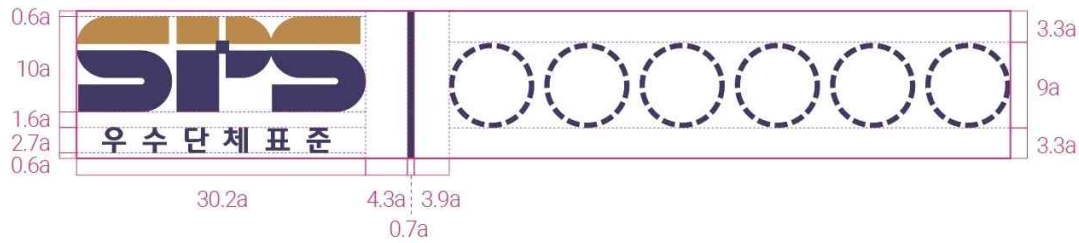
<단체표준 인증제품 · 서비스 표시 — 인증단체명 8자 이내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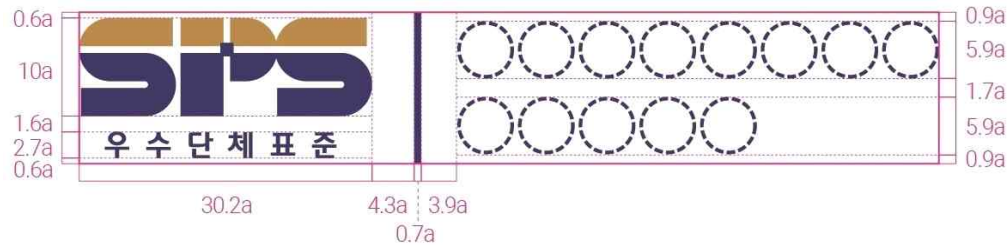
<단체표준 인증제품 · 서비스 표시 — 인증단체명 9자 이상>



<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 — 인증단체명 8자 이내>



<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 - 인증단체명 9자 이상>



2. 표시대상

가. 단체표준 인증제품 · 서비스 표시: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 · 제공하는 단체표준 인증제품 · 서비스

나. 우수 단체표준 표시: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 중 제18조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조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

3. 표시방법

가. 기본형

1) 색상

(가) "SPS" 표시 상부 1/3은 시안(cyan)색 , 하부 2/3는 남색으로 한다. 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의 경우 상부 1/3은 금색으로 한다.

(나) 시안색은 CMYK C100(PANTONE 299 C), 남색은 CMYK C100 M90 Y25(PANTONE 2747 C), 금색은 CMYK C5 M35 Y75 K25 (PANTONE 873 C)로 한다. 시안색 · 남색 · 금색이 표시대상 제품 등의 색상과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다른 색으로 할 수 있다.

2) 크기: 표시 대상 제품 · 포장재 등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인증표시를 표현할 수 있다(가로와 세로 길이의 비율은 유지해야 한다).

나. 인증단체명

1) 색상: 인증단체명과 세로구분선은 남색으로 한다.

2) 서체: 국문서체는 LH Bold, 영문서체는 양평균체 Bold로 한다.

3) 그 밖의 사항

(가) 인증단체명은 두 줄로 표기할 수 있다.

(나) 표시대상 제품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세로구분선을 생략하거나 인증단체명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.

II. 단체표준 인증 공장 표시판

1. 표시

가. 기본형

<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표시판>



<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표시판>



2. 표시대상

가.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 표시판: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

나.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표시판: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 중 제18조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

공장

3. 표시방법

가. 기본형

- 1)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mm, 세로 290mm로 한다.
- 2) ‘단체표준 인증 공장(사업장)’ 및 ‘우수 단체표준 인증 공장’의 서체는 LH Bold로 하며, 크기는 각각 120pt 및 105pt로 한다(1pt = 0.35mm).
- 3) 인증단체명, 인증번호 및 인증품목(표준)명을 표기할 때 색상은 남색으로 하고, 국문서체는 LH Bold, 영문서체는 양평군체 Bold로 한다.
- 4) 인증번호 및 인증품목(표준)명 글자의 크기는 45pt로 한다.
- 5) 모든 표기 요소는 앞판을 기준으로 가운데로 정렬한다.
- 6)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하며, 뒷판의 색상은 단체표준 인증공장·사업장의 경우 남색으로,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경우 금색으로 도장한다.

나. 보조 표시판을 추가하는 경우: 인증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보조 표시판에 인증번호와 표준명을 적어 표시판 아래에 부착한다.

- 1) 보조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35mm로, 세로는 최소 60mm로 한다. 표시하려는 인증품목의 개수에 따라 세로의 길이는 늘릴 수 있다.
- 2) 보조 표시판은 기본형 표시판의 오른쪽 끝에 맞추어 부착한다.